

5/3

대 법 원

제 3 부

관 결

사 건 2018두317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울 종로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상고인 국회사무총장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누75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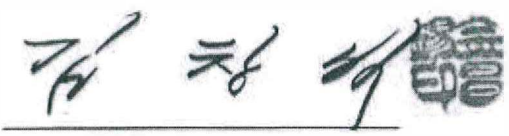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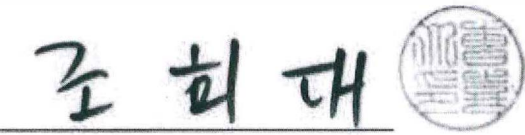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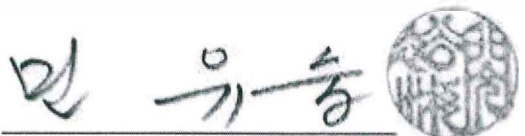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3.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정본입니다.

2018. 5. 3.

대법원

법원사무관 박원재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